

# 생계비계좌특약

**제1조(약관의 적용)** 생계비계좌(이하 '이 예금'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.

**제2조(예금과목)**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, 보통예금으로 합니다.

**제3조(가입대상)**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서 연령에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.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(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)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합니다.

② 이 예금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합니다.

③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,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계좌 해지 전에 이러한 제한사항(해지 후 당월 재개설 불가)을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.

**제4조(입금제한)** ①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(250만원)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(매월 초일부터 말일) 입금 금액을 제한합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합니다.

**제5조(거래제한)** ① 이 예금은 저축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.

②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할 수 없습니다.

③ 이 예금은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④ 이 예금은 만기 시 원리금 자동입금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, 제4조에 따른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·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·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·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·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
**제6조(이자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)** 이 예금의 이자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은 「저축예금특약」, 「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」을 따릅니다.

**제7조(비과세종합저축)**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부 칙<2026.1.20.>

이 약관은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.